

마약범죄는 이민법상 엄하게 다루어진다. 먼저 마약범죄는 간단한 마약소지 경범죄와 마약밀매 중범죄로 나눌 수 있다.

마약관련 첫 경범죄인 경우 2011년 7월 14일 이전까지는 재활조치 방안에 의하여 형사 법정에 제출한 plea(유죄/무죄 답변)를 취소한다면 추방이나 입국 금지 등의 이민법상의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1년 7월 14일 이후부터 기소된 마약관련 경범죄는 나중에 plea를 취소하더라도 전과기록이 잔류하여 이민자 본인의 신분에 즉각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민법상의 처벌을 피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동찬**

이민 변호사

약물인지 증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민법상으로 문제가 없다.

또한 형사법 변호사가 검사를 설득해 비공식적으로 plea

당면해야 한다.

영주권자가 마약관련 중범죄로 처벌받았을 때, 재입국은 금지되었으나 추방을 면한 경우 영주권은 유지할 수 있으나 미국을 떠나면 재입국할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왜냐면 마약관련 중범죄의 전과가 있다는 것은 형사 전과기록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잔류하거나 형사재판 없이도 규제약물 범죄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국입국 금지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검사의 재량에 따라 극단적인 이민법상의 결과(추방, 재입국 금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2010년 미국

## 마약관련 전과로 당면하게 되는 이민법 문제

마약 범죄의 전과 기록은 첫 범죄기록이라도 미국에서 추방되거나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마약 관련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영주권자는 추방당할 수 있고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또한 박탈당하게 된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을 시에는 추방당하는 날까지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

그러나 형사법 변호사를 고용해 검사를 설득하여 마약과 관련 없는 범죄로 plea를 하거나, 미확인 규제 약물 소지죄, 또는 30g 미만의 마리화나/하쉬시 소지죄로 plea할 수 있다면 추방을 면할 수 있다.

미확인 규제 약물 소지죄는 가령 "코카인"이라는 약물의 정체를 거론하지 않은 채 가주법상 "미확인"된 규제 약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plea하는 방법이다. 미확인 규제 약물 소지죄라는 전과기록이 남았다면 그 약물의 성분이 무엇인지, 연방법이 정한 규제

hearing을 연기하여 다음 청문회까지 피고가 사회봉사와 약물 상담 치료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방당할 위험이 없는 다른 범죄로 plea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규제약물의 밀매는 무조건 중범죄인데, 이 중범죄는 가장 극단적인 이민법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규제약물 중범죄란 일반적으로 "운반"의 범주에 들어가는 범죄(매매/매매를 위한 소지)이거나 주법으로 처벌하는 데 연방법으로 처벌하는 마약 중범죄와 동격인 범죄를 말한다.

가주법의 규제약물 명단에 있는 약물이지만 연방법의 규제약물 명단에 등재되지 않은 약물로 전과가 있다면 이 역시 추방될 만한 근거도, 중범죄도 아니다. 그러나 연방법과 가주법에서 정한 규제약물 명단은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장차 연방의 규제약물 명단에 해당 약물이 등재된다면 그 때 가서 다시 극단적인 이민법상의 결과와

연방대법원의 판례(Padilla v. Kentucky)에서 plea bargaining(양형 거래)시 형사 범죄 처벌보다 더 심각한 이민법상의 처벌이 피고를 기다린다면 담당 검사에게 비시민권자 피고가 당면한 이민법상의 결과와 참작을 하도록 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살면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단순한 호기심으로 마약 문제에 연루되는 것만큼 고달픈 일이 없다. 특히 영주권자 신분으로 자칫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기회도 없이 가족을 뒤로 하고 억지로 혼자 추방당한다면 그 역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가장 현명한 일은 마약 따위에 접근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행여 문제가 생겼다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미국에 함께 사는 방법을 찾도록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도움이 필요하면 전문가와 하루속히 상의하는 것을 권한다.

(213)291-9980